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313호

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 유지·관리 및 운영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

「용산공원 조성 특별법」 제20조의2, 제57조의3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반환부지에 대한 유지·관리 및 운영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합니다.

1.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

위탁업무의 내용	수행기관
법 제20조의2에 따른 반환 예정이거나 반환이 완료된 용산부지 (부분적으로 반환된 부지를 포함하며, 이하 "반환부지"라 한다)에 대한 유지·관리 및 운영	한국토지주택공사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